

S
W
E
N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환경부는 2004년 12월 31일 개정·공포된 토양환경보전법의 후속조치로서 6월 20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법 시행령 개정안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금년 7월부터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

동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주유소 등 토양오염물질 저장시설에 대하여 누출검사를 강화하고, 토양정화업에 대한 등록요건을 정하며, 농작물의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경지에 대하여는 토양오염대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류 등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설치후 10년이 경과하는 때에는 4년 또는 6년 주기의 누출검사를하도록 하되, 4년 주기의 검사를 할 때에는 가압시험 또는 감압시험에 의한 간접방식의 검사를, 6년 주기의 검사를 할 때에는 개방식에 의한 비파괴검사를 하도록 하여 지하유류저장시설의 누출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종전에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 받았던 송유관중 자동누유검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설은 토양오염도검사를 받도록 하여, 송유관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하였다.

반면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이 가능한 사유를 현장의 실정에 맞게 확대 규정함으로써 저장시설의 설치·운영에 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금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토양정화업등록 제도에 따라 토양정화업이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을 정하였으며, 토양분야 기술자격제도가 '04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를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하여 토양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이 촉진되도록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서 재배작물의 중금속 함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경지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넘거나, 유류·중금속 등이 복합적으로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토양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동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재 유류의 토양오염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농경지·주거지역 등에 대하여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항목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500mg/kg 으로 정하고, 토양오염대책기준을 $1,200\text{mg/kg}$ 으로 정함으로써 최근 유류사용증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지·공원 등 사람의 접근성이 많은 지역의 토양오염을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토양오염이 발생한 현장의 부지가 협소하여 발생장소에서 토양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일정한 시설을 갖춘 장소로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게 하여 건설공사장 등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 반출정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04. 12. 31 개정·공포된 토양환경보전법이 오는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는 토양오염신고제도로서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가공·취급과정에서 누출·유출한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하도록 하여 토양오염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오염토양의 투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오염토양의 투기를 근절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해성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오염원인자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를 평가하여 오염정도 및 재정적 여건 등에 따라 정화의 범위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게 하였다.

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지난 2004년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연환경보전법」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 규칙 개정안을 지난 6월 23일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생태·경관완충구역 및 전이구역에서의 허용 행위, 자연경관영향의 심의대상·기준 등 세부사항을 신설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제도 등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라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환경부 협의 또는 지자체 검토대상)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구체화하였다.

- 위와 같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중에서 사전 환경영향평가는 협의대상인 경우에는 환경부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의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또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5인 이내의 위원을 선정·심의) 받아야 한다.

둘째, 종전의 생태계보전지역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바뀌면서 핵심, 완충, 전이구역으로 구분 지정됨에 따라 종전법상의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핵심구역에만 적용하고, 완충구역 및 전이구역에

서는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농수산 및 임산물의 보관·판매시설, 제1종·제2종 균린생활시설, 초등학교, 병원 등 주거·생계활동을 위한 건축물 등의 신·증·개축을 치등화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보호지역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을 크게 완화하였다.

셋째,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노천탐광·채굴사업에만 부과하였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을 개발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개발사업을 추가하여 그동안 제기된 개발사업자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는 2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10~11월중 공포,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금년 2월부터 실시한 '자연경관활성화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결과(협성대 도시환경연구센터, 7월 완료) 등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자, 평가서 작성 대행자 등이 활용할 세부운영지침 및 자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자연경관 검토지침 등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안)〉

①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등 보전지역 경계로부터의 거리

- 자연공원: 산악형(최고봉 700m 미만 2km, 1200m 이상 5km), 해안형(2km), 계곡·하천형(1km) 이내
- 습지보호지역: 500m
- 생태·경관보전지역: 면적에 따라 500m~2km

② 보전지역 주변 이외의 지역에서의 협의대상

〈행정계획〉: 24개

- 지구지정: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 에너지·수자원: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 온천개발계획
- 교통시설: 도시철도기본계획,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 지정 등
- 산지개발: 채석단지 지정, 골재채취단지 지정
- 대형건설 공사: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 등

〈개발사업〉

-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구역 등 자연경관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종
- 높이 15m(5층) 이상의 건축물, 길이 50m 이상 교량, 2km 이상의 도로·철도의 개설 및 확장 등을 포함하는 사업
- 개발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면제하고, 지자체가 개발사업의 인·허가시 검토
-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46개 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건설, 도로 건설, 댐 등 수자원 개발, 개간 및 공유수면 매립, 관광단지 개발, 산지 개발, 특정지역 개발, 체육시설 설치, 토석·자갈 채취 등

7월부터 공공기관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해야

7월부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가 본격화되고, 친환경상품 인증제도가 개선되는 등 친환경상품 보급이 더욱 활성화된다.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친환경상품은 유한한 자연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뿐 아니라 환경오염의 치유 및 복원비용을 줄여 국가경제에 기여한다"며 "공공부문이 우선 앞장서 친

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민간부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곽 장관은 친환경상품 보급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오는 7월부터 2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를 본격 시행하고 ▲5년 단위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해마다 구매지침을 공공기관에 시달하겠다고 밝혔다.

또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행 환경마크협회를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며 ▲친환경상품의 선정과 인증절차 등을 개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분야에서도 자발적으로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7월중 100대 기업과 자발적협약을 추진하며 ▲생산자 소비자가 함께 하는

친환경상품전시회를 개최해 개발, 생산, 구매, 소비에 대한 정보 공유와 체험의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곽결호 장관은 “친환경 상품 보급이 확대되면 환경산업이 육성되는 효과가 있다”며 “친환경상품의 제조, 판매, 유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7월부터 시행되는 의무구매로 지난 2003년도 2,627억원이던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액은 내년에는 1조원으로 늘어나는 등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며 정책의 성공을 예측했다.

그는 또 “친환경상품 활성화 사업은 사후의 오염물질 정화가 아닌 친환경상품의 생산을 통한 예방적인 환경정책의 하나”라며 이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토양오염, 3683개 지점 중 26개 지점에서 대책기준 초과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3,683개 토양측정망 지점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오염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카드뮴(Cd), 6가크롬(Cr⁶⁺) 등은 전년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금속 중 카드뮴(Cd), 비소(As), 수은(Hg)의 평균농도는 자연함유량 이하로 나타났고, 납(Pb), 구리(Cu)는 자연함유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용도별로는 공장용지에서 구리(Cu), 납(Pb), 아연(Zn), F(불소)등이 높게 나타났고, 도로에서는 납(Pb), 아연(Zn), 불소(F),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의 오염도가 높았다. 또 철도용지에서는 구리, 납, 아연, 불소, TPH 등이, 과수원은 구리 등이 타

용지에 비해 다소 높은 오염도를 보였다.

특히 제주도는 니켈 초과지점이 많아 국립환경연구원 등이 합동정밀조사를 벌였으나, 오염원은 발견되지 않았고 지역적인 특성상 자연함유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사대상인 3,683개 지점 중 61개 지점(1.7%)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고, 이 중 26개 지점(43%)은 토양오염 대책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기준을 초과한 중금속 중 각 항목별 최고치는 아연의 경우 포항의 아연 도금 공장에서 17,217.5 mg/kg를, 니켈은 김포시 통진면에서 224.192 mg/kg를 나



타냈고, 납은 인천시립사격장 주변에서 2,650.6 mg/kg를, 비소는 포천군의 광산에서 128 mg/kg를, 구리는 연천의 동파이프 제조공장에서 1,953.125 mg/kg를 나타내 각각 최고치를 보였다.

환경부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이 초과된 61개 지점에 대해서 정밀조사 등의 정화대책을 추진하고 앞으로

'06. 3월 토양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토양측정망 확충, 토양오염물질의 종류 확대, 지역별 토지용도별 오염기준을 세분화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양측정망은 1,500개 전국망과 2,183개 지역망을 합해 전국에서 모두 3,683개 지점이 운영되고 있다.

가축분뇨, 체계적 관리와 자원화방안 마련

내년부터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축산농가는 친환경 농장으로 지정돼 지도점검 면제,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 각 자자체는 농경지의 양분함량을 정밀하게 평가해 가축사육규모를 적정히 관리할 수 있으며, 현재 생활환경보전지역, 수질환경보전지역 외에 사육이 과밀하게 이루어지는 지역도 가축사육이 제한된다.

환경부와 농림부는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동으로 마련해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환경부와 농림부가 함께 마련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률로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축산폐수 대신 가축분뇨로 용어를 통일했으며, 가축분뇨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사전예방책 마련, 가축분뇨의 자원화 강화, 불법 오염행위에 대한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밀집사육 지역의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한편, 시·군·구는 조례를 제정해 이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 발생된 가축분뇨는 퇴비나 액비 등으로 자원화하고 잔여량을 정화처리하기 위해 축분과 놀을 분리해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때는 기술과 재정지원이 가능하고,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도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한다.

한편 점점 기업화, 전업화되는 축산농가들의 불법오염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별 칙을 강화했다.

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해 오염을 일으키면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축산농가가 오염행위를 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입법예고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결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2005년 중에 공포되고, 오는 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홈페이지는 www.keef.or.kr 입니다.